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3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서영교 · 김동아 · 김의겸
김용민 · 박지원 · 김한규
김남희 · 박균택 · 이성운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u>검찰청</u> , 경찰청, 해양경찰청,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처</u> ----- -----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u>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u>검찰청</u> , 경찰청, <u>해양경찰청</u> 및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 ----- ----- ----- ----- ----- ----- -----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처</u> ----- <u>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u> ----- -----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협회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u>대검찰청 차장검사</u>, <u>경찰청 차장</u>, <u>해양경찰청 차장</u> 및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u>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u>검찰청</u>, <u>경찰청</u>, <u>해양경찰청</u> 및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회의회의 구성) ① ----- ----- ----- <u>공소청 차장검사</u>, <u>중대범죄수사청 차장</u>----- <u>해양경찰청 차장</u>,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u> 및 <u>국방부차관</u>-----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임규정) ----- ----- ----- <u>공소청</u>, <u>중대범죄수사청</u>-----<u>해양경찰청</u>,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u> 및 <u>국방부</u>----- ----- -----.
---	--